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10.31(목)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11. 12(화)

다. 상정일자 : 2013.11. 12(화)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마련」 개선 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과 용어정비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어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하여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250,000천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사용용도를 보면 “평창강 지방하천 준설”, “재난사각지대 하천 호안보강”, “수해·폭설 응급복구”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이 심의안건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5이상”을 “15 이상”으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을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  
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  
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